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27. 김교홍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6.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9. 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26.)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1. 27.)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교홍의원)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유일합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물리적 거리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이 제공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신설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규모의 적정성,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현황과 개선 정도, 인천광역시의 광역시로서의 상징성과 다른 광역시와의 형평성, 신규 법원 설치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의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 부산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보다 먼저 발의되었으나, 아직 심사되지 않음. 각급 법원 설치 법안을 개별적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든 각급 법원 설치 법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
- 인천광역시는 광역시 중 인구 수가 두 번째로 많고, 이미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에 따라 유희공간 활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크지 않으므로, 신속히 설치할 필요
- 각급 법원 설치를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 등에 따라 개별적, 산발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국회법」 제71조 및 제112조에 따라 표결하여 의결